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696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
발의자 : 서영교 · 이수진 · 이해식
이성윤 · 박지혜 · 박홍배
조계원 · 이강일 · 윤준병
양부남 · 정준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년원 ·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(수갑, 포승, 가스총, 전자충격기, 머리보호장비, 보호대)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,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 ·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(법무부훈령)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.

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, 폭행,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,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이에,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

한편,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).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로 하고,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감호업무보조자) ① 소년원·소년분류심사원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방지 조치를 위하여 감호업무를 보조하는 자(이하 “감호업무보조자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감호업무보조자의 자격요건 및 그 업무의 구체적 범위 등 필요 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③ 감호업무보조자는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4조의3(종전의 제14조의2)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무원으로”를 각각 “공무원 또는 감호업무보조자로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가스총이나”를 각각 “가스총, 가스분사기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공무원으로”를 “공 무원 또는 감호업무보조자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

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가스분사기

(8) 감호업무보조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소년원·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하여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소년원·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14조의2(감호업무보조자) ①</p> <p><u>소년원 ·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방지 조치를 위하여 감호업무를 보조하는자(이하 “감호업무보조자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감호업무보조자의 자격요건 및 그 업무의 구체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</p> <p>③ 감호업무보조자는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
<u>제14조의2(보호장비의 사용) ①</u>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	<u>제14조의3(보호장비의 사용) ①</u>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가스분사기</u> 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<u><신 설></u> 4. ~ 6. (생 략)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	② ----- ----- --- <u>공무원 또는 감호업무보조</u>

년등에 대하여 수갑,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	<u>자로-----</u> ----- 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<u>공무원으로</u>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,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<u>가스총이나</u>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 <u>공무원 또는 감호업무보조자로-----</u> ----- <u>가스총, 가스분사기나-----</u> ---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라 <u>가스총이나</u>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④ ----- <u>가스총, 가스분사기나-----</u> ----- -----.
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<u>공무원으로</u>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<u>공무원 또는 감호업무보조자로-----</u> -----.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⑧ <u>감호업무보조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소년원 · 소년</u>

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지
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
하여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
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즉
시 소년원·소년분류심사원 소
속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
다.

⑧ (생 략)

제14조의3 · 제14조의4 (생 략)

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

제14조의4 · 제14조의5 (현행 제1
4조의3 및 제14조의4와 같음)